제274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2008년 9월 26일 (금)

심 사 보 고 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충청북도의회
행정소방위원회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08. 9. 26.
행정소방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9월 9일
충청북도지사

2. 회 부 일 자 : 2008년 9월 12일

3. 상정 및 의결일자

제27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2008. 9. 19)·제2차 행정소방위원회(2008. 9. 22)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수정)

Ⅱ.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곽임근)

1. 제안이유

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충북학사 신축·이전과 충북체육회관 증축, 진천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건의 변화로 추진방법과 사업규모를 변경하고

나.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도 노인회관 증축과 분수국유림 수익분배금으로 산림의 공익 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사유임야를 매입하며

다. 소방청사의 효율적 관리와 진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원활히 설치할 수 있도록 진천군과의 공유재산 교환을 추진하고자

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산의 취득 - 충북학사 신축·이전

○ 위　　치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64외 6필지

○ 사업규모 및 변경내역

구 분	추진 방법	사업규모(㎡)		사 업 비(백만원)			비고
		부지	건물	계	국비	도비	
당 초	신축	3,600	10,000	45,000	-	45,000	지하 1층 지상10층
변 경	매입	2,692	12,586	45,000	-	45,000	
증 감	-	△908	2,586	0	-	0	

○ 사업기간 : 2007. 12 ~ 2009. 9

○ 투자계획 : 2009년 - 45,000백만원

나. 재산의 취득 - 충청북도 체육회관 증축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38-7

○ 사업규모 및 변경내역

구 분	증축규모(㎡)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국비	도비	
당 초	2층 1,468	1,830	-	1,830	
변 경	1층 735	1,293	-	1,293	
증 감	△1층 733	△537	-	△537	

○ 사업기간 : 2007. 4 ~ 2008. 12

○ 투자계획 : 2008년 - 1,293백만원

다. 재산의 취득 - 진천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 신축

○ 위　　치

- 변경 :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250외 4필지
- 당초 :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287외 2필지

○ 사업규모 및 변경내역

구 분	사업규모(㎡)		사 업 비(백만원)			비고
	부지	건물	계	국비	도비	
당 초	3,300	740	1,550	-	1,550	지하1층 지상2층
변 경	7,506	826	1,600	-	1,600	
증 감	4,206	86	50	-	50	

○ 사업기간 : 2008. 9 ~ 2009. 12

○ 투자계획 : 2008년 - 650백만원, 2009년 - 950백만원

라. 재산의 취득 - 충청북도 노인회관 증축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554-58

○ 증축규모

구 분	사업규모(㎡)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부지	건물	계	분 권 교부세	도비	
충청북도 노인회관 증축	248	990	1,200	1,000	200	지하 1층 지상 3층

○ 사업기간 : 2008. 10 ~ 2009. 12

○ 투자계획 : 2008년 - 1,200백만원

마. 재산의 취득 - 공유임야 확대조성

○ 위　　치 : 청원군 미원면 금관리 산 8외 5필지

○ 매입규모

구 분	매입면적 (㎡)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국비	도비	
도유림 매입	844,053	923	-	923	분수국유림 수익분배금

○ 사업기간 : 2008. 9 ~ 2008. 12

○ 투자계획 : 2008년 - 923백만원

바. 재산의 취득·처분 - 공유재산 교환

○ 교환시기 : 2008. 9 ~ 2009. 12

○ 교환대상

- 취득(군유지) : 진천 진천 장관 6-2외 5필지
  9,932.8㎡(소방청사 부지 등)
- 처분(도유지) : 진천 이월 송림 130외 29필지
  14,851㎡(화풍이월체육공원 부지)

○ 사업기간 : 2008. 9 ~ 2008. 12

○ 사 업 비 : 114백만원(도비)

○ 투자계획 : 2008년 - 114백만원

Ⅲ. 검토보고 요지

(행정소방전문위원 윤영창)

가. 충북학사 이전 신축

충북학사는 1991년도에 개관하여 시설이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입사(入舍)를 희망하는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현재 서울시 강남구 개포2동에 위치한 학사를 매각하고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 새로운 학사를 신축하여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007년 12월 10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제출되어 제266회(2007.12.21.)정례회에서 원안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건으로, 추진과정에서 부지매입의 어려움 등이 있어 추진방법을 신축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부지와 건물면적에도 일부 변동이 발생하여 다시 제출되었음.

충북학사 신축 변경내용

구 분	당초계획	변경계획	비 고
추진방법	신축	매입	추진방법변경
부지면적	3,600㎡	2,692㎡	908㎡ 감소
건축면적	10,000㎡	12,586㎡	2,586㎡ 증가
사 업 비	45억원	45억원	변동없음

충북학사 신축·이전은 현 학사를 매각하여 그 재원을 활용하여야 하고,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 등 사업추진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며, 추진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내용이나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

나. 충청북도 체육회관 증축

본 건은 청주시 방서동에 위치한 충청북도 체육회관을 증축하여 장애체육인과 생활체육인의 숙원사항인 사무실을 마련해 주고 또한 체육단체의 공동입주로 체육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2007년 4월 9일 도지사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259회 임시회(2007.4.24)에서 원안의결하여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음. 그러나 건축허가 협의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다시 제출하게 된 건임.

충청북도 체육회관 증축 변경내용

구 분	당초계획	변경계획	비 고
건축면적	2층 1,468㎡	1층 735㎡	1층 733㎡ 감소
사 업 비	1,830백만원	1,293백만원	537백만원 감소

변경계획을 검토한 결과, 청주시 방서동에 소재한 충청북도 체육회관은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에 따라 4층 이하로 건축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당초 2개층 1,468㎡의 증축계획을 1개층 735㎡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되어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건축면적이 1/2로 대폭 축소조정되고 있어 당초 목적한 체육단체 입주 등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이에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함.

다. 진천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 신축

진천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는 혁신도시 건설과 공장 입주로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덕산면과 초평면을 관할하기 위하여 13명(현재 2명 근무)의 소방인력을 확보하여 2009년에 신설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7년 10월 23일 도지사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265회 임시회(2007.11.9.)에서 원안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나 부지매입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매각의사를 번복함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다시 제출되었음.

덕산119안전센터 신축 변경내용

구 분	당초계획	변경계획	비 고
위 치	옥동 287외 2필지	옥동 250외 4필지	위치 변경
부지면적	3,300㎡	7,506㎡	4,206㎡ 증가
건축면적	740㎡	826㎡	86㎡
사 업 비	1,550백만원	1,600백만원	50백만원 증가

변경계획을 검토한 결과, 변경된 부지가 당초 부지와 연결된 필지로 위치 변경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부지 면적이 당초계획 대비 2배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라. 충청북도 노인회관 증축[3)]

도 노인회관은 현재 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사무실 48평을 무상임대 사용하고 있어 도 노인회가 추진하는 노인취업, 건강교육, 노인대학 등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자 12억원(분권교부세 10억·도비2억)의 사업비로 연면적 990㎡의 노인회관을 도 노인종합복지회관 부지내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노인회관 건축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및 건축관계 법령 등 공법상 제한사항이 없고, 노인회관을 건축하더라도 건축바닥면적이 총 부지면적 12,038㎡ 중 10.8%에 해당하는 1,295㎡(노인종합복지회관 1,047㎡·노인회관 248㎡)로 야외프로그램 운영상에도 문제점은 없으므로 본 계획안에 대해 이견은 없으나

도 노인회관 건축을 위하여 소요예산 12억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2008.4)에 요구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도 노인회와 도 노인종합복지회관의 프로그램 유사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 청주시에 건립시 이용대상이 주로 청주시 거주 어르신이므로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삭감된 바 있어 이에대한 설명이 필요함.

---

3) 사실상은 노인회관 신축에 해당하나 기존 건물(노인종합복지회관)이 있는 동일 지번에 기존건물보다 작은 규모로 건축을 할 때에는 건축법령에 따라증축으로 허가

마. 공유임야 확대조성

공유임야 확대 조성은 우리 도가 분수국유림을 경영하여 산림청으로부터 분배받은 수익금으로 도유림을 연차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사업임.

분수국유림은 도내 27필지 10,044ha를 경영하여 97억원의 수익금을 분배받았으며, 2005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418.6ha의 임야를 60억원에 매입하였음.

임야 매입은 기존의 도유림과 인접하여 집단화가 가능하거나 산림경영이 가능한 10ha 이상의 임야를 대상으로 산주와 감정가격에 매입하기로 협의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매입하게됨.

이번에 매입할 임야는 청원군 미원면 금관리 소재 49.8ha, 괴산군 연풍면 주진리 소재 26.8ha, 괴산군 청천면 대티리 소재 7.9ha로 기존 도유림의 인근지역에 있어 집단화가 가능한 임야와 산림경영이 가능한 10ha이상의 임야로서 적정한 도유림 조성이라고 판단됨.

바. 공유재산 교환

본 건은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130번지외 29필지(14,851㎡)의 도유지에 진천군에서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군유지와 교환을 요청해 옴에 따라

현재 광혜원119안전센터 등 소방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군유지 등을 도유지에 상응하는 군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견은 없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 요지 : "생 략 "

Ⅵ. 심사 결과 : 수정가결

가. 심사절차 : 세부 계획별로 질의·답변을 한 후 심사의결

나. 심사결과 : 수정가결(동의 2건, 삭제 4건)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심도 있는 검토 및 질의 후 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함.

○ 동의 : 진천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 신축과 공유임야 확대 조성의 건

-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조기 사업완료가 필요하고, 매각동의서를 징구하여 토지소유주와의 약속이 행이 된 사항이 인정되어 동의함.

○ 삭제(부동의) : 충북학사 신축·이전, 충청북도 체육회관 증축, 충청북도 노인회관 증축, 공유재산 교환의 건

- 충북 노인회관 증축의 건은 지난 4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시 소관위원회에서 도 노인종합복지회관의 프로그램과 유사성 등의 사유로 사업비 전액이 삭감된 사업이며
- 충북체육회관 증축의 건은 충고제한 규정에 저촉되어 건축규모가 1/2로 축소된 사업임.

- 이와같이 사업비 전액이 삭감되고 당초계획이 변동되는 원인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서면심사 등 형식적인 운영이 그 원인이며 특히, 이번에 제출된 건은 그 사안이 중대함에도 서면심사를 한 것은 사전 행정절차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판단하여 위원회에서는 4건을 삭제(부동의)함.

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사시스템 개선 권고

○ 향후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대면방식의 실질적인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하여 건축·도시계획 등 공법상 제한규정 검토, 사권 설정·공유지분 등 확인을 위한 각종 공부열람, 토지매입 가격의 적정성 및 매각동의서 징구 여부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촉구함.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Ⅸ.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등.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260

제출연월일 : 2008년 9월 23일
제 출 자 : 행정소방위원회

1. 제안사유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거 진천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사업부지와 사업규모 변경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건의 변화로 계획을 변경하고

○ 분수국유림 수익분배금으로 산림의 공익 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사유임야를 매입하고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진천소방서 덕산 119 안전센터 신축≫

o 위 치 :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250외 4필지

o 사업규모 : 토지매입 7,506㎡, 건물신축 지하1・지상2층 826㎡

o 사업기간 : 2008. 9 ~ 2009. 12

o 사 업 비 : 1,600백만원

※ 변경내역

- 부지매입 : 진천 덕산 옥동 287외 2필지 3,300㎡
  → 진천 덕산 옥동리 250외 4필지 7,506㎡
- 건물신축 : 지하1층・지상2층 740㎡ → 826㎡
- 사 업 비 : 1,550백만원 → 1,600백만원

o 투자계획 : 2008년 - 650백만원, 2009년 - 950백만원

≪공유임야 확대조성≫

- ㅇ 위　　치 : 청원군 미원면 금관리 산 8외 5필지
- ㅇ 매입규모 : 임야 844,053㎡(세부내역 따로 붙임)
- ㅇ 사업기간 : 2008. 9 ~ 2008. 12
- ㅇ 사 업 비 : 923백만원(분수국유림 수익분배금)
- ㅇ 투자계획 : 2008년 - 923백만원

3.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 첨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수 정 안 대 비 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7-1)

《 집행부 제출안 》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수 정)			합 계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4	456,241.00㎡	21,577,116	4	857,283.80㎡	1,707,394	8	1,313,524.80㎡	23,284,510
		건물	3	5,206.00㎡	9,060,000	4	2,929.00㎡	599,800	7	8,135.00㎡	9,659,800
		기타									
	매입	토지	4	456,241.00㎡	21,577,116	3	847,351.00㎡	1,036,200	7	1,303,592.00㎡	22,613,316
		건물									
		기타									
	교환	토지				1	9,932.80㎡	671,194	1	9,932.80㎡	671,194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3	5,206.00㎡	9,060,000	4	2,929.00㎡	599,800	7	8,135.00㎡	9,659,800
		기타									
처분	계	토지	2	9,006.60㎡	18,935,914	1	14,851.00㎡	556,764	3	23,857.60㎡	19,492,678
		건물	1	4,225.61㎡	1,786,490				1	4,225.61㎡	1,786,490
		기타									
	매각	토지	2	9,006.60㎡	18,935,914				2	9,006.60㎡	18,935,914
		건물	1	4,225.61㎡	1,786,490				1	4,225.61㎡	1,786,490
		기타									
	교환	토지				1	14,851.00㎡	556,764	1	14,851.00㎡	556,764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7-1)

《 행정소방위원회 수정안 》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수 정)			합 계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4	456,241.00㎡	21,577,116	2	848,259.00㎡	923,200	6	1,304,500.00㎡	22,500,316
		건물	3	5,206.00㎡	9,060,000	1	86.00㎡	50,000	4	5,292.00㎡	9,110,000
		기타									
	매입	토지	4	456,241.00㎡	21,577,116	2	848,259.00㎡	923,200	6	1,304,500.00㎡	22,500,316
		건물									
		기타									
	교환	토지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3	5,206.00㎡	9,060,000	1	86.00㎡	50,000	4	5,292.00㎡	9,110,000
		기타									
처분	계	토지	2	9,006.60㎡	18,935,914				2	9,006.60㎡	18,935,914
		건물	1	4,225.61㎡	1,786,490				1	4,225.61㎡	1,786,490
		기타									
	매각	토지	2	9,006.60㎡	18,935,914				2	9,006.60㎡	18,935,914
		건물	1	4,225.61㎡	1,786,490				1	4,225.61㎡	1,786,490
		기타									
	교환	토지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2008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7-2)
《 집행부 제출안 》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추정가액(천원)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주소,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계	토지	3 건	854,251.00	20,686,200				
	건물	4 건	15,137.00	29,329,800				
	기타							
1	토지	서울 영등포 당산 121-64외 6필지	2,692.00	19,113,200	2007~2009	충북학사 이전	(주)대원	매 입
	건물	서울 영등포 당산 121-64외 6필지	12,586.00	25,886,800	2007~2009	충북학사 이전	(주)대원	매 입
	기타							
2	토지							
	건물	청주 흥덕 사직 554-58	990.00	1,200,000	2008~2009	노인취업 및 교육공간 확보	증 축	
	기타							
3	토지							
	건물	청주 상당 방서 38-7	735.00	1,293,000	07.4~08.12	충청북도 체육회관 증축	증 축	
	기타							
4	토지	진천 덕산 옥동 250외 4필지	7,506.00	650,000	08.9~09.12	덕산119안전센터 신축부지 확보	김철희외1	매 입
	건물	〃	826.00	950,000	〃	덕산119안전센터 신축	신 축	
	기타							
5	토지	청원 미원 금관 산 8외 5필지	844,053.00	923,000	08.9~08.12	공유임야 확대 조성	박동민외3	매 입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2008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7-2)
《 행정소방위원회 수정안 》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추정가액(천원)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주소,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계	토지	2 건	851,559.00	1,573,000				
	건물	1 건	826.00	950,000				
	기타							
1	토지	진천 덕산 옥동 250외 4필지	7,506.00	650,000	08.9~09.12	덕산119안전센터 신축부지 확보	김철희외1	매 입
	건물	〃	826.00	950,000	〃	덕산119안전센터 신축	신 축	
	기타							
2	토지	청원 미원 금관 산 8외 5필지	844,053.00	923,000	08.9~08.12	공유임야 확대 조성	박동민외3	매 입
	건물							
	기타							
3			이	하	없	음		
4								
5								
	건물							
	기타							

2008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 (7-5)

《 집행부 제출안 》

(단위:㎡,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구분	재산표시 소재지	재산표시 수량(㎡)	추정가액(천원)	취득시기	교환사유	교환대상자	비고
계	토지	취득	1 건	9,932.80	671,194				
		처분	1 건	14,851.00	556,763				
	건물	취득							
		처분							
	기타	취득							
		처분							
1	토지	취득	진천 진천 장관 6-2외 5필지	9,932.80	671,194	09.9-12	점유 또는 필요한 재산을 교환확보하여 효율성 제고	진천군수	
		처분	진천 이월 송림 130외 29필지	14,851.00	556,763				
	건물	취득							
		처분							
	기타	취득							
		처분							
2	토지	취득							
		처분							
	건물	취득							
		처분							
	기타	취득							
		처분							
	토지	취득							
		처분							
	건물	취득							
		처분							
	기타	취득							
		처분							

2008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 (7-5)

《 행정소방위원회 수정안 》

(단위:㎡,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구분	재산표시 소재지	재산표시 수량(㎡)	추정가액(천원)	취득시기	교환사유	교환대상자	비고
계	토지	취득	-	-	-				
		처분	-	-	-				
	건물	취득							
		처분							
	기타	취득							
		처분							
1	토지	취득	-	-	-	-	-	-	
		처분	-	-	-				
	건물	취득							
		처분							
	기타	취득							
		처분							
2	토지	취득							
		처분							
	건물	취득							
		처분							
	기타	취득							
		처분							
	토지	취득							
		처분							
	건물	취득							
		처분							
	기타	취득							
		처분							

매입대상 토지내역
《 집행부 제출안 》

(단위:㎡, 원)

연번	재산 소재지	지목	면 적	재산가액	비 고 (용 도)
	계 18필지		854,251	20,686,200,000	
1	서울 영등포 당산 121-64	대	551	3,912,100,000	충북학사 신축 이전부지
2	서울 영등포 당산 121-65	대	357	2,534,700,000	
3	서울 영등포 당산 121-66	대	314	2,229,400,000	
4	서울 영등포 당산 121-275	대	393	2,790,300,000	
5	서울 영등포 당산 171-1	대	327	2,321,700,000	
6	서울 영등포 당산 121-280	대	605	4,295,500,000	
7	서울 영등포 당산 121-281	대	145	1,029,500,000	
8	진천 덕산 옥동 250	전	377	32,045,000	덕산119안전 센터 신축부지
9	진천 덕산 옥동 284-1	전	1,314	208,505,000	
10	진천 덕산 옥동 251-4	답	2,453	124,780,000	
11	진천 덕산 옥동 251-5	답	1,468	160,990,000	
12	진천 덕산 옥동 251-6	답	1,894	123,680,000	
13	청원 미원 금관 산8	임야	493,488	569,726,000	공유임야 확대 조성부지
14	청원 미원 금관 238	임야	2,446	3,053,000	
15	청원 미원 금관 239	임야	764	954,000	
16	청원 미원 금관 240	임야	1,015	1,267,000	
17	괴산 연풍 주진 산 4-1	임야	267,792	264,000,000	
18	괴산 청천 대티 산14-30	임야	78,548	84,000,000	

매 입 대 상 토 지 내 역
《 행정소방위원회 수정안 》

(단위:㎡, 원)

연번	재산 소재지	지목	면 적	재산가액	비 고 (용 도)
	계 11필지		851,559	1,573,000,000	
1	진천 덕산 옥동 250	전	377	32,045,000	덕산119안전센터 신축부지
2	진천 덕산 옥동 284-1	전	1,314	208,505,000	
3	진천 덕산 옥동 251-4	답	2,453	124,780,000	
4	진천 덕산 옥동 251-5	답	1,468	160,990,000	
5	진천 덕산 옥동 251-6	답	1,894	123,680,000	
6	청원 미원 금관 산8	임야	493,488	569,726,000	공유임야 확대조성부지
7	청원 미원 금관 238	임야	2,446	3,053,000	
8	청원 미원 금관 239	임야	764	954,000	
9	청원 미원 금관 240	임야	1,015	1,267,000	
10	괴산 연풍 주진 산 4-1	임야	267,792	264,000,000	
11	괴산 청천 대티 산14-30	임야	78,548	84,000,000	

공유재산 교환대상 토지내역

《 집행부 제출안 》

□ 도유지(처분)

(단위:㎡, 원)

연번	재산 소재지		지 목	면 적	재산가액	비 고 (용 도)
	계 30필지			14,851	556,763,300	
1	진천 이월 송림 130		답	3,242	64,840,000	체육시설부지
2	〃	609- 3	답	585	21,645,000	〃
3	〃	609-30	대	241	8,435,000	〃
4	〃	609-51	답	311	12,066,800	〃
5	〃	609-52	대	337	17,726,200	〃
6	〃	609-53	잡종지	985	44,423,500	〃
7	〃	609-54	도로	317	3,867,400	〃
8	〃	609-55	답	3,729	112,988,700	〃
9	〃	609-56	답	332	7,868,400	〃
10	〃	609-57	답	268	13,024,800	〃
11	〃	609-58	하천	599	16,951,700	〃
12	〃	609-59	잡종지	122	8,283,800	〃
13	〃	609-60	답	215	11,911,000	〃
14	〃	609-61	대	297	22,423,500	〃
15	〃	609-62	도로	228	6,452,400	〃
16	〃	609-63	잡종지	100	6,790,000	〃
17	〃	609-64	하천	321	9,084,300	〃
18	〃	609-65	대	214	18,575,200	〃
19	〃	609-66	대	183	15,884,400	〃
20	〃	609-67	대	303	26,300,400	〃

연번	재산 소재지		지 목	면 적	재산가액	비 고 (용 도)
21	진천 이월 송림	609-68	대	263	22,828,400	체육시설부지
22	진천 이월 송림	609-69	도로	735	20,800,500	
23	〃	609-70	잡종지	151	10,252,900	〃
24	〃	609-71	전	200	13,880,000	〃
25	〃	609-75	대	42	2,326,800	〃
26	〃	609-76	잡종지	8	543,200	〃
27	〃	609-77	잡종지	427	28,993,300	〃
28	〃	609-78	잡종지	39	2,648,100	〃
29	〃	609-79	대	15	1,302,000	〃
30	〃	609-80	대	42	3,645,600	〃

□ 군유지(취득)

(단위:㎡, 원)

연번	재산 소재지		지 목	면 적	재산가액	비 고 (용 도)
	계 6필지			9,932.8	671,193,900	
1	진천 진천 장관	6-2	전	1,825.0	116,617,500	소방청사
2	〃 행정	876	답	4,084.0	77,596,000	비축토지
3	진천 덕산 한천	501	답	2,852.8	65,614,400	〃
4	진천 광혜원 광혜원	529-136	대	390.0	139,230,000	소방청사
5	〃	529-139	대	388.0	138,516,000	〃
6	〃	529-140	대	393.0	133,620,000	〃

공유재산 교환대상 토지내역

《 행정소방위원회 수정안 》

□ 도유지(처분)

(단위:㎡, 원)

연번	재산 소재지		지 목	면 적	재산가액	비 고 (용 도)
		없		음		

□ 군유지(취득)

(단위:㎡, 원)

연번	재산 소재지		지 목	면 적	재산가액	비 고 (용 도)
		없		음		

관 계 법 령 발 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